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.

발 의 자 : 서일준 · 안철수 · 한지아
서천호 · 임종득 · 이달희
김상훈 · 고동진 · 정동만
김재섭 · 김장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국가 경제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.

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·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,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

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).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8호의2 중 “영업비밀 침해”를 “영업비밀 침해, 산업기술의 유
출·침해”로 한다.

제6조제35호의2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바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부
터 제4항까지 및 제3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 침해에 관한 범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
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
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
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.

1. ~ 35. (생략)

35의2.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
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
의 범죄

가. ~ 마. (생략)

<신설>

36. ~ 50. (생략)

-----.

1. ~ 35. (현행과 같음)

35의2. ---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
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
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
및 제37조에 규정된 산업
기술 침해에 관한 범죄

36. ~ 50. (현행과 같음)